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746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가 2021. 6.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917,570원, 지방교육세 9,183,510원, 가산세 28,143,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8. ○○ ○○구 B건물, C호를 본점으로 하여 매니저업, 연예활동단체 기타 공연단체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 본점을 ○○ ○○구 D건물, 2층을 본점으로 이전하였고, 2016. 11. 30. ○○ ○○구 E 토지 및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9,447,3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77,892,600원, 지방교육세 37,789,260원, 농어촌특별세 18,894,630원 합계 434,578,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0. 30.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95.69㎡ 부분(이하 '1층 부분'이라 한다)에 카페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므로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전단에 근거하여 1층 부분의 면적비율만큼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5,917,570원, 지방교육세 9,183,510원, 가산세 28,143,780원 합계 83,244,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10. 10.까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21.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7. 10. 30.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부터 1층 부분을 직접 사용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위 1층 부분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는 본점을 이전하고, 1층 부분 등 일부는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을 뿐 1층 부분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1층 부분 임대가 잘 되지 아니하여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공실이던 1층 부분에서 임시로 카페를 운영한 적은 있으나, 일반인들에 대한 매출은 극히 적었고 주로 원고의 직원들에게 무상음료 제공, 모임·회의·식사·휴게 장소 제공 등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초 취득 목적대로 언제든지 1층 부분을 다시 임대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11개월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일시적인 사용을 두고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수도권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데, 예상과 달리 임대차계약이 금방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이던 기간 중 원고가 임시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옥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7. 2. 3. 주식회사 F(대표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등 3개 층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일 6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2. 3.부터 2020. 2. 3.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회사는 1층 부분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10. 30.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25. 원고의 목적사업에 '음료 및 커피 판매업, 커피 원두 유통업'을 추가하고, 2017. 10. 30. 일반음식점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1층 부분에서 위 'H'이라는 상호와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카페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위 카페의 운영을 시작할 무렵 작성된 '카페 운영관련 직원복지 실시의 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직원복지실시 내용
>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운영중인 카페의 음료 1일 2잔 무상 제공
> 2) 생일자 팀별 저녁식사 무상 제공
> 3) 평일 야근 및 주말 근무 시 카페에서 무상으로 식사 제공
> 4) 촬영장 음료 지원
> 5) 그 외 카페 이용 시 50% 할인 혜택제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2. 운영 효과

1) 무상음료 제공을 통해 회사에 대한 소속감 및 충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2) 야근식대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3) 영업 시, 회사 이미지 높이고 영업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원고가 1층 부분에서 'H'을 운영한 기간 중 작성하였다는 손익계산서(갑 제20호증)에 의하면, H의 매출액보다 직원급여 및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 등이 훨씬 많아 11개월 간 합계 49,151,37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8년 9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I에게 1층 부분을 임대하였고, I은 원고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내지 제2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1층 부분의 임차인이 수개월 만에 영업을 그만두었고 조건이 맞는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없자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임시로 11개월 정도 카페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음부터 1층 부분에 지점을 설치하여 음식점 및 카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1층 부분을 직접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1층 부분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은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는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즉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대상 중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추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결국 위 추징규정은 부동산 취득일이 지점 등 설치일보다 앞서는 경우, 즉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설치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설치 등 용도로 직접사용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한편 아래 2)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원고가 1층 부분에서 임시로 운영한 카페를 '지점'으로 볼 수도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1층 부분을 지점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1층 부분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1층 부분의 면적만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층 부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1층 부분이 공실이던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임시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카페를 운영한 행위는 지점을 설치하여 대외적인 영업이나 거래활동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점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부대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층 부분에서 운영한 카페가 본점과 별도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공실인 1층 부분을 일시적·시험적으로 카페로 이용하였던 것이어서 직원/외부인 매출 구분과 영업이익 등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지만, 1층 부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외부인에 대한 판매금액은 미미하였고 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식사 및 음료 제공, 생일/연말파티 등 행사장소 제공, 직원들의 고객 미팅장소, 회의장소 등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11개월 간 5,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제출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종전 임차인이 1층 부분에 설치한 시설 및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주로 직원들에게 식음료 제공을 하였고, 약 11개월 후 임대차 조건이 맞는 제3자에게 다시 1층 부분을 임대하였는바, 이는 1층 부분이 공실인 기간 동안 임의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직원들 복지향상에 이용한 것일 뿐 언제든 다시 임대하려는 목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는 1층 부분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면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한데도 원고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이를 공실로 두고 직접 카페를 운영한 것은 원고가 1층 부분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한 번 체결하면 장기간 갱신의무가 발생하고 차임의 인상폭에도 상한이 존재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공실 기간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11개월 간 1층 부분을 공실로 둔 상태에서 직접 이용한 것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1층 부분에서 운영하던 카페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금 및 회계업무 등도 원고의 본점에서 함께 처리하여 1층 부분에 관한 독자적인 세무·회계업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층 부분에서 외부인에게도 식음료를 판매한 행위는 대외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그 매출금액이 미미하였다면 그와 같은 정도의 판매행위만으로 1층 부분에 관하여 지점으로서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나 대외적인 거래활동이 존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1층 부분에서 수행한 업무는 본점에서의 업무수행과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원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식음료 제공, 식사 및 행사장소 제공 등으로서 본점 운영에 부수하는 시설 및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1층 부분을 별도의 독립된 '지점'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원고의 '지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끝>